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관련 연구·개발, 조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정보로 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1) 기본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방자

치단체의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자료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품질 제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규정
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사
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 이용 불편사항 등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농업과학기술정
보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안 제8조)

- 1)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속성·특성 및 이력 자료(메타정
보)를 최신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정보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2)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통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제
공하고, 별도 분석이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 요청자 또는 학술·
통계 목적 활용 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절차 또는 활용 목적·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각각 농
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효율적인 사업 또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상호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 참여하는 사업 실행계획~~를~~을 심사하여 기자재 구입, 정보분석·활용 교육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함

바.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시설·장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2조)

- 1)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촌진흥청에 두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 2)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컨설팅 내용을 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실태,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일부 사업 또는 농업과학기술정보 실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항은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조사에 관한 정보
2.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으로서 농업·농업인·농촌에 관련된 국제적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조사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정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 기본계획에 투입하는 연도별 자원 확보 계획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종류, 예산,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자료
2.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관리 및 제공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자료의 이용목적
2. 제출 기한
3.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4. 제출자료의 분석 방법
5. 제출자료 이용 기간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라 한다)에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시험·분석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구축 사업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정보 수집을 위한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등과 공동사업 수행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주기적인 품질 점검 관련 사업
7.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8.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품질 제고)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이용자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등록 누락, 이

용 불편 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수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제공·등록·변경등록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또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정보관계도(정보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활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의 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 외에 별도의 정보 유지 및 가공 등이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 제공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9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함에 있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과 지원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장이 정할 수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사업의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 내용

가.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사업 관련 인건비

나.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사업 수행 관련 기자재 구입 및 시설 구축비

다. 그 밖에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구축·운영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적 지원 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나.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석·활용에 관한 교육 제공

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라. 그 밖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사업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사업 시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관리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교육사업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안정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보급 및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확산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두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별도 공간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시험·분석기기 등 장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 시설·장비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정도관리(시설·장비의 성능 검사 또는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말한다)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분석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장

비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의 보유실태,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조사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일부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의 보유실태,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 조사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연 락 처	(063) 238 - 0921